

# 2017년 하반기 일반직 사원 채용 공고

대전도시공사 2017년도 하반기 일반직사원(행정직, 기술직, 전문직)의 공개경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

2017년 9월 25일



※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른 입사지원서 및 면접을 적용합니다.  
(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17-185호 / 2017. 9.18.)

## 1. 채용 구분별 예정 직급 및 인원

직렬 및 직급	인원	담당예정업무	근무예정지	임용일	연봉
계	5명				
행정직 7급	1명	일반행정업무(레저 및 환경시설 운영 포함), 보상 및 주택관리 업무, 택지 및 주택분양업무 등	본사 및 대전지역 내 사업장	2018. 1. 1. 이내	약 27,000 천원
기술직(토목) 7급	1명	토목관련 계획 및 시공감독 업무 등			
기술직(기계) 7급	1명	기계관련 계획 및 시공감독 업무, 기계시설운영·관리 등			
전문직(수의) 7급	1명	대전오월드 수의관련 업무 (진료, 예방, 수술, 행정 등)			
전문직(간호) 7급	1명	일반 간호업무 및 보건행정, 보건교육, 산업안전보건업무 등			

## 2. 응시 자격 요건

### 가. 기본 자격요건

#### 1) 기본요건

- ▶ 공사 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.

####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

1. 성년후견개시된 자, 한정후견개시된 자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9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- ▶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20조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.
  - ※ 공무원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별표(불합격판정기준) 적용
- ▶ 근무부서의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 및 초과·변경근로가 가능한 자.

#### 2) 응시 연령

- ▶ 공개경쟁 : 19세(1998년 출생) 이상 34세(1983년 출생) 이하
  - ※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, 고용상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(차별금지의 예외) 제4호에 의거
  - ※ 공사 일반직사원 정년(60세)

#### 3) 성별 및 학력

- ▶ 제한 없음.
- ▶ 남자의 경우 공고일 전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.

#### 4) 지역 제한

구 분	자 격 기 준
행정 기술(토목) 기술(기계) 전문(간호)	·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본인 또는 직계존속(부, 모에 한함)이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. (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자 제외)
전문(수의)	· 지역제한 없음. (전국단위 모집)

#### 나. 직렬별 자격요건

- ▶ 행정직 7급 : 별도의 자격기준 없음.
- ▶ 기술직 7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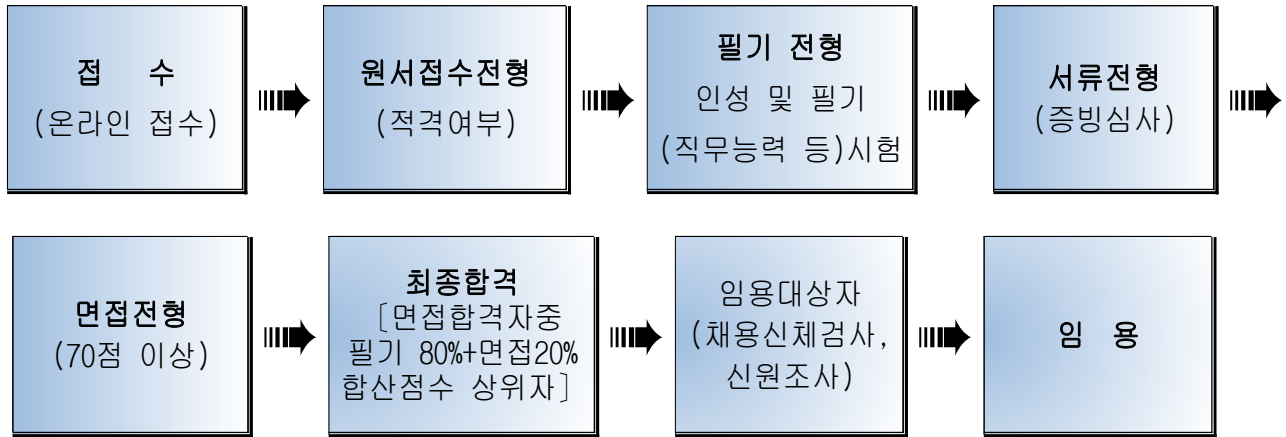
구 분	자 격 기 준
기술(토목)	·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“별표 2” 중직무분야 토목관련과 도시·교통관련 분야 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증 소지자 1. 토목구조기술사, 토질 및 기초기술사, 도로 및 공항기술사, 상하수도기술사, 지질 및 기반기술사, 토목시공기술사, 토목품질시험기술사, 도시계획기술사 2. 토목기사, 도시계획기사
기술(기계)	·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“별표 2” 중직무분야 기계제작과 기계장비설비·설치분야 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증 소지자 1. 기계기술사, 건설기계기술사,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. 일반기계기사, 건설기계설비기사, 공조냉동기계기사

- ▶ 전문직 7급

구 분	자 격 기 준
전문(수의)	·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
전문(간호)	·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

### 3. 전형절차 및 합격기준

#### 가. 전형절차



#### 나. 전형별 합격기준

##### 1) 원서 접수전형

- ▶ 인터넷 원서 접수 자료를 기준하여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전원

##### 2) 인성 및 필기(직무능력 등) 시험

- ▶ 인성검사 판별기준에 의해 판정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
- ▶ 인성검사 합격자 중 필기(직무능력 등) 시험 순위에 의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
  - ※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
- ▶ 인성 및 필기(직무능력 등)시험 판정기준

구 분		판 정 기 준	합격기준	불합격 처리
인성검사 판별기준	1. 응답 신뢰도	70% 이상	정상 판별자 합격 처리	각 항목 기준점에 미달되는 응시자 불합격처리
	2. 인성점수	60점 이상		
필기시험	3. 필기점수	순위 점수부여	직렬별 채용인원의 3배수	시험 과목별 40점 미만자 및 전체 평균 60점 미만자 불합격처리
	4. 직무능력 점수			

▶ 직렬별 인성 및 필기(직무능력 등)시험 과목

구 분		인성검사	필 기(공통)		필 기(전공)
공개경쟁	행정 7급	인성검사 (약 210~ 240문항) 30분	직무능력 검 사 (약 70문항) 60분 / 100점	한국사 (20문항) 20분 / 100점	해당분야 전공 (20문항) 20분 / 100점
	기술(토목) 7급				
	기술(기계) 7급				
	전문(수의) 7급				
	전문(간호) 7급				

※ 과목별 출제 범위 또는 수준

- 직무 능력 : 판단, 수리, 응용, 논리, 사고, 이해, 탐구능력
- 한국사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수준
- 행정 전공 : 행정학개론, 회계원리, 지방공기업법
- 토목 전공 : 응용역학개론, 수리수문, 토질역학
- 기계 전공 :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, 건설기계일반, 배관일반
- 수의 전공 : 수의내과학, 예방수의학, 임상수의학, 야생동물학
- 간호 전공 : 성인간호학, 지역사회간호학

3) 서류전형

- ▶ 면접대상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의 증빙서류 징수 후 확인

※ 자격요건 부적격자 불합격

※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자격요건 확인 서류는 면접전형 시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음.

4) 면접전형

- ▶ 개별면담으로 하고 위원들의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하며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.
- ▶ 평정요소 : 공사인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용모·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기타 발전가능성, 종합평정

5) 최종합격자 선정

- ▶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(직무능력 등)시험 성적 80% + 면접시험 20% 비율로 최종점수 산정하여 고순위자로 선정

※ 필기(직무능력 등) 점수 산정은 직무능력 + 한국사 + 해당전공 점수의 평균점 적용

※ 동점자 발생 시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,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동 시행령상 청년, 대전광역시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정

## 6) 추가합격자 선정

- ▶ 인성 및 필기(직무능력 등)시험 합격자로 선정되었으나 서류전형 결과 자격이 미달되거나 허위사실로 응시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게 되며, 이 경우 인성 및 필기(직무능력 등)시험 합격 후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.
- ▶ 최종합격자의 채용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 및 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시, 수습기간 부적격으로 인한 임용 불가 시, 수습기간 중 본인사정에 의한 사직 시,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최종합격자의 선정 기준의 후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 할 수 있음.

## 4. 원서접수 및 채용계획 일정

### 가. 원서접수

#### 1) 공고기간 : 2017. 9. 25. ~ 2017. 10. 16. (21일간)

- ▶ 대전도시공사, 대전광역시,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, 대한민국공무원되기, 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게시

#### 2) 접수기간 : 2017. 10. 10.(화) ~ 2017. 10. 16.(월) 18:00 (7일간)

#### 3) 접수처

- ▶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([www.dcco.kr](http://www.dcco.kr)) 채용공고란  
※ 입사지원서 접수 시 최종제출 클릭 및 응시표 출력 후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4) 접수방법

- ▶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만 실시  
※ 우편 및 방문, 이메일 등의 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.

### 나. 채용계획 일정

#### 1) 원서접수전형 합격자 발표 : 2017. 10. 17.(화) (필기시험 장소 및 시간 포함)

#### 2) 인성 및 필기(직무능력, 전공 등) 시험 : 2017. 10. 19.(목)

- ※ 위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으며, 모든 채용계획의 일정은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([www.dcco.kr](http://www.dcco.kr))에 공고합니다.

## 5. 가산점 적용 안내

### 가. 가산점 내역

구 분	직 렬	대 상 자	가산점	비고
취업보호(지원) 대상자	공 통	불 임 1 참조	필기 및 면접 시험 만점의 5~10%	금회 가점 대상 없음
자격증 소지자	행 정 직	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 공인노무사, 변리사, 법무사	필기시험 본인 득점의 10%	직 렬 별 자격요건 해당자격
	기술직(토목)	기술사		
	기술직(기계)	기술사		

### 나. 가산점 적용 방법

- ▶ 가산점 적용 자격요건은 공고일 전일부터 서류전형 제출일까지 자격 유지자에 한함.
- ▶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는 과락결정 전 부여하며, 해당 분야 기술사 및 전문 자격 대상자는 과락결정 후 부여함.
- ▶ 가산점 적용 요인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 적용함.
  - ※ 다만,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 될 경우에는 합산 함.
- ▶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가산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인정 하는 적용비율을 가산하며, 직렬·직급별 채용예정인원의 30%를 초과 할 수 없음.(금회 채용가점 적용분야 없음)
  - ※ 취업보호(지원)대상 여부 및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(보훈청)에 확인하여야 함.
  - ※ 합격자 결정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보호(지원)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의거)

## 6. 기타사항

-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, 성별,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우리 공사의 직급체계는 1 ~ 7급까지 7직급 체계입니다.
-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으며, 수습기간 종료 시 적·부 판정에 의거 임용합니다.
- 모든 응시자는 1인 1개 분야(직렬)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희망자는 지역 및 연령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분야에 입사 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,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가산점 및 비율 착오 기재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입사지원서 등 제출 서류의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 할 수 있으며, 허위내용 작성 시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.
- 응시자는 공고문 등에서 안내하는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- 각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접수된 응시원서는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
  - ※ 입사지원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월 이내 전산상 자료를 파기합니다.
- 입사지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인성 및 필기(직무 능력 등)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(인사규정 제14조)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.
- 접수된 입사지원서의 기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으므로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바랍니다.
- 본 시험 계획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내용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도시공사 인사총무팀(☎042-530-910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인사규정 제11조 관련 별표 1

구 분	세 분	가산 점수 및 부가 점수	가산시점
취업보호 및 지원 대상자	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1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2.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.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4.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.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6.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	전 시험전형의 각 과목별 만점의 5% ~ 10%	과락 결정전 부여

- ※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가 모집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※ 필기시험 가점 적용 시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가 응시직렬의 가산대상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.